■ 야권통합이 광주·전남 정치권에 남긴 과제

‘민주깃발’만 보지말고 ‘실력’ 키워라

통합정당 정체성 맞는 정치력·비전 필요

당권주자 박지원 유일…인재양성도 시급

민주당이 지난 11일 전당대회를 열고 찬반 투표와 당무위원회 결정까지 가는 진통 끝에 통합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통합은 양 측 통합 수임기구의 합당 의결 절차를 통해 오는 18일 최종 합의될 전망이며 통합 정당은 이르면 올해 내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 정당 출범은 광주·전남 정치권에 ‘새로운 도전’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 등 호남이 핵심 기반이었던 반면,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 정당은 호남을 뛰어넘는 전국 정당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0년 이후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함께 민주·진보세력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민생과 소통’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의 정치·지역적 구도가 붕괴, 호남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져 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통합 정당의 정체성에 대해 민주화와 인권에 방점이 찍혀있기 보다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 민생 경제, 복지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 정당에서 광주·전남 등 호남은 과거의 영향력을 크게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 정당에서 호남의 위상은 타 지역과 같은 1/n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통합 정당의 대주주 가운데서 호남세는 찾아보기 힘든 형국이다. 20여명에 이르고 있는 통합 지도부 후보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 인사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유일하다.

그만큼 광주·전남 정치권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늘에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시대적 현안에 대한 치열함이 부족했고 현장에 기반하는 정치력과 소신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박주선, 박지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기 보다는 내년 공천 등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보신’에 급급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통합 정당의 출범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에 대한 치열함을 바탕으로 정치력과 비전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도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숙제가 부여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에서 ‘눈 앞의 경력’에 현혹되기 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비전과 소신이 있는 인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의 위기는 정치인과 유권자의 공동책임”이라며 “이번 통합 정당 출범과 내년 총선을 계기로 지역 정치권이 새로이 태어날 수 있게 지역 유권자들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비대위’ 출범 임박

활동 시기·권한 놓고 계파·세력간 파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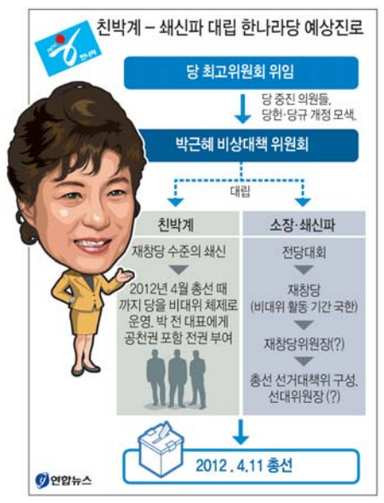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킬 것으로 보여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전면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전 대표의 당 전면복귀는 지난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5년5개월만이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시기 및 권한 등을 놓고 계파·세력 간 입장차를 노출하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대부분과 친이(친이명박)계 일각 그리고 당 중진들은 ‘박근혜 비대위’가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주도권을 포함해 전권을 갖고 내년 총선까지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쇄신파와 수도권 친이계는 비대위의 가장 큰 임무는 신당 수준의 재창당인 만큼, 비대위 활동기간은 재창당 준비에 국한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대권 경쟁자인 정몽준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당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 쇄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진 의원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3선 이상 당 중진 의원 38명 가운데 29명이 참석했다.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쇄신파 의원 10명은 전날 밤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친박계가 구상 중인 후속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친박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당은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총선 전에 실질적인 재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신당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박근혜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 정치인들 “총선 출마” 러시

내년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2일 광주·전남 정치인들의 총선 출마 선언이 잇따랐다.

전갑길 전 국회의원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광주 광산 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항상 광주, 광산과 함께 고락을 나누고 성장한 만큼 광주와 광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안과 비전이 있다” 지지를 호소했다.

〈전갑길〉

〈임내현〉

〈김재두〉

임내현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하고 “무능과 부패, 반민주적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광주 북구을 출마를 선언했다. 임 변호사는 “변언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실현해 줄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대중적인 공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두 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최근 20년 동안 중앙정치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젖 먹던 힘까지 쓰겠다”며 담양·곡성·구례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수석부대변인은 “야권통합만으로는 안 되고 관료화, 노쇠화된 민주당을 젊고 참신한 사람들로 바꿀 때만이 건강한 당이 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당직자들이 손학규 대표를 보호하고 있다.

상처뿐인 손-박

통합 전대서 대격돌 대권·당권 입지 흔들

민주당의 야권 통합 국면에서 통합 방안을 놓고 격돌했던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남은 것은 정치적 상처뿐이다.

통합 결의를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의결정족수 논란까지 겹치며 통합의 감동이 실종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대권과 당권을 꿈꿔왔던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이다.

우선 손 대표는 이번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통합 결의를 이뤄냈지만 당초 목표대로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통합의 명분과 대의를 선점하고도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과 전략 부재로 곳곳에서 리더십의 허점을 보였다는 평가다.

실제로 당헌·당규 문제로 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가 하면 반대 진영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원의 섭섭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절차와 과정들이 강조되지 않으면서 반발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1일 전당대회장에서는 ‘한나라당 출신의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을 팔아먹는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유인물들이 난무했다. 통합의 파트너인 시민통합당도 친노 그룹과 시민사회진영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손 대표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보기도 힘들다.

손 대표가 민주당의 통합 결의를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대권 가도를 위해 실제로 손에 쥔 것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번 통합 논란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통합 방안을 놓고 손 대표 등 지도부와 정면으로 맞서면서 ‘통합 반대파’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통합 방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며 이번 임시전당대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냉랭하다.

박 전 대표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연한 정치력을 보이기보다 당권을 염두에 두고 너무 강경하게 나서면서 이번 임시 전당대회 사태가 촉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정당 지도부 선출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지도부에는 입성할 수도 있겠지만 당권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박 전 원내대표 측으로 분류됐던 당내 인사들도 점차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18대 국회에서 국정 경험과 정치적 내공을 토대로 맹활약을 펼치면서 화려하게 재기했던 박 전 원내대표는 통합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통합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민주당 3인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

민주당 김영진·이낙연·박지원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로부터 2011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을 받았다.

또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장상에 우윤근 법사위원장, 우수의원상에 박주선·최인기·조영택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는 지난 2007년말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각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 모니터단을 운영, 매년 최우수·우수 의원과 상임위원장을 선정해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남, 광주시체육회 공로패 받아

광주시의회 김영남(민주·서구3) 행정자치위원장은 12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2011 광주체육인의 밤’에 참석, 광주시 체육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광주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함으로써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기동 고운하이츠2차 주상복합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 35004 호 (2011. 12. 0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2번지
■ 공급규모 : 지상 9층 아파트 1개동 총 88세대 및 오피스텔
■ 공급대상 (면적단위: ㎡)

구분	주택형(주거면적)	세대별 면적					주택형별 대지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 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58.0601 (82)	58.0601	24.6857	82.7458	1.4143	84.1601	37.3170
	29.8170 (A1)	29.8170	13.4202	43.2372	0.7263	43.9635	19.1643
	29.8170 (A2)	29.8170	13.4202	43.2372	0.7263	43.9635	19.1643
	61.7796 (B1)	61.7796	26.0811	87.8607	1.5049	89.3656	39.707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금액단위: 천원)

주택형	층 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1.12.29)	잔금 (입주시)
			대지비	건축비	합계			
58.0601 (82)	2층	1	35,787	105,813	141,600	14,160	84,960	42,480
29.8170 (A1)	전층	66	18,378	58,702	77,080	7,708	46,248	23,124
29.8170 (A2)	전층	14	18,378	58,702	77,080	7,708	46,248	23,124
61.7796 (B1)	전층	7	38,079	117,921	156,000	15,600	93,600	46,800

1.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2.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발코니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임.(확장형을 선택할 경우 확장비용이 추가됨)
3.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4.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층 및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함)
5. 중도금은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투자대비(입는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인,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의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6. 입주시 중도금대출원금은 상환하거나 임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함. 단, 대출미신청자 또는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7. 전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검사일이 지난후 납부할 시에는 소정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8.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9.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배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10.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중첨탑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제세금액은 잔금 납부시에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11.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라인별 · 층별 ·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 청약 접수 순위별로 접수하여 동 · 호수를 추첨하며, 추첨 결과에 따라 각동 라인별 · 층별 · 호별로 구분됨.
12.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등 본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지각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에 청약신청하여 부적격 당첨되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1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일 하면기 때문에 안심하고 분양받으시도 됩니다.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1. 09. 29)에 따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15.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전실, 벽체공유 등 공용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에는 관리실등 별도의 면적과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음.
16. 본 아파트의 재당첨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됨
17. 본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조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인 경우 0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구 분	재 당 첨 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분 양 권 전 매 제 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제2항)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일로부터 03년	최초 계약체결기능일로부터 1년

단, 2012.3.31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청약시 재당첨 제한적용이 유예됨니다(다만,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제한은 적용됨)

■ 일반공급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12. 13)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12. 13)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3.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4. 광주광역시는 청약예금계도 실시 지역임이 지역으로 청약예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순위에 따라 공급함.
5. 청약자격은 광주광역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등록된 자에 한함.
6.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여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을수 있음.
■ 순위별 신청자격 및 접수일
1.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면적구분	순 위	청 약 신 청 자 격	비 고
민 영 주 택	전 주택형	1순위	광주광역시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순위	광주광역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순위	광주광역시에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신청기간 및 장소

구분	순위	접수일자	청약 접수 시간 및 장소	당첨자 발표
민영 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2011. 12.22.(목)	· 시 간 : 10:00 ~ 17:00 · 장 소 : 당사 견본주택	· 일 시 : 2011. 12. 26.(월) 오후 02:00. · 장 소 :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 명단은 상기접수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어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전화문의는 대화독우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재외동포는 국내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인감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등본 등) · 청약 신청금(전 주택형, 일금백만원, 기금적 광주광역시 소재 발행은행의 수표 1매씩 준비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 확인서류(가주지, 세대주 등) · 취업계좌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통장인출금가능통장)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자격조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아래의 사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등록 또는 외교인의 인정장 사본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의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대리인의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주민등록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4. 1,2,3순위 청약신청과

구 분	청약신청금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전 주택형	100만원	가능한 한 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지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낙첨자 청약신청금 환불
1) 환불기간 : 2011년 12월 27일 쇠요일
2) 환불방법 : 청약접수 시 제출한 청약접수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3) 청약 환불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해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공 통	· 당사 견본주택에서 선정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 · 호수를 결정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정당 당첨자 중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 참가자자를 표시한 예비당첨서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에앞서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공급신청한 청약 통장의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적용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안법
1.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등은 별도 통보함.
2.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 정당 당첨자 : 2011. 12. 26(월). ~ 2011. 12. 27(화). (2일간, 시간 : 10:00 ~ 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전화번호 062-225-0300)
– 정당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2.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한국외환은행	630-000247-142	고운하이츠(주)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망.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과 무통장입금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3.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계약금(가능한 한 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주지명, 세대주 여부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 가족관계등록부 1통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세대에 한함) – 장애인 수정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호수승계명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의 호적등본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구 분	구 비 서 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재당첨금지 등 부적격자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0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계약시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의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1)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2)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3)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이체금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4)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면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청약 신청시 신청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를 준용함.
5. 계약자 대출안내
1)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지저원이 가능하고,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안내예정이며, 용지가능금액은 개인의 신용도 및 정부정책,LTV 및 DTI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함.
2) 계약자 본인의 귀책사유(대출 가능여부 사전 미확인 등을 포함하여)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 회차별 약정금액은 본인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시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시 및 금액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중도금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4) 대출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
1. 입주 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입주자 사전방문 세부일정은 추후 개별통보함)
2. 사전방문시 점검대상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품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
■ 입주예정일
1. 2011년 12월 30일
2.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동등.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건축물 사용승인일 일 하면기에 해당사항 없음.
■ 발코니 확장 비용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 택 형	58.0601 (B2)	29.8170 (A1)	29.8170 (A2)	61.7796 (B1)
금 액	4,014,000	1,804,000	3,055,000	4,035,000

1.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6조 제항 제1호, 제4호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확장 세대의 기본품목을 차감한 가격임.
3. 발코니 확장은 실평 ·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4. 상기 비용은 발코니 시시 금액이 포함된 가격임.
5.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6.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외부 시시가 설치되지 않음.
7.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 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명	감 리 금 액	비 고
전 기 통 신	이엔건축사사무소	15,180,000원	부가세 포함
소 방	한길이엔씨	5,940,000원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평]은 명평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평방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방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평형면적(㎡) × 0.3025 또는 평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예비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한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